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가단214655(본소), 2020가단203361(반소)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·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주식회사 A

피고(반소원고)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

담당변호사 오경빈

변론 종결2020. 4. 23.

판결 선고2020. 5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. 8. 3. 접수 제2310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C가 부담하고,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사천시 D 임야 99,174m² 중 359117/46601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. 8. 3. 접수 제23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반소 :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는,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2016년경 사임하여 자신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C가 원고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2016년경 사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20. 1. 15. 발급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여전히 E이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C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위 본소를 추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, 이 사건 본소는 그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.

2.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별지 '반소 청구원인'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은 민법 제270조, 제576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8. 8. 3. 접수 제2310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

인용한다.

판사송인권

별지